

2014년부터 달라지는 환경행정

환경관련 법령 등의 개선으로 2014년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, 대기총량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 폐지,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,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,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범위 및 수당인상, 급여 신설 등의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.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〈편집부〉

01

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

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관리를 위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가 시행

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실시 Ⅰ

추진배경 도로이동오염원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관련 부품의 고장이나 노후화 등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소음의 과다 배출을 예방하기 위함

주요내용

-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관리를 위한 정기검사제도 시행
 - '14년도 배기가스 260cc 초과, '15년도 100cc 초과~260cc, '16년도 50cc 이상~100cc
- 정기검사 시행 결과 기준 초과 시 정비·점검을 거쳐 재검사

시행일 2014년 2월 6일

담당부서 환경부 교통환경과 (☎ 044-201-6931)

02

수도권지역 도로 대기오염 상시측정 운영 및 도로청소 강화

도로주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도로를 대상으로 오염 저감사업을 강화

Ⅰ 수도권지역 도로 대기오염 상시측정 운영 및 도로청소 강화 Ⅰ

추진배경 도로주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오염 저감사업 추진

주요내용

- ① 측정장비 탑재차량 상시 운영(환경부) 및 그 결과를 지자체 통보
- ② 오염도가 높은 도로 관할 지자체에 대해 도로청소 등 조치 요구(환경부→지자체)

시행일 2014년 1월 17일

담당부서 환경부 대기관리과 (☎ 044-201-6902)



03

수도권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 폐지

수도권지역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이 경제여건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출허용총량 이전제도를 개선

|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 폐지 |

추진배경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이 경제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

- ① 총량관리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중 미사용 할당량의 전부를 이전 가능하도록 확대

주요내용 ※ (현행) 미사용 할당량의 20~30% (1~3차년도분에 한해 적용)만 이전가능하도록 규정

- ② 할당기간 5년치 배출허용총량에 대해 할당량 이전이 가능하도록 확대

※ (현행) 당해연도에 한해 이전하도록 제한

시행일 2014년 1월 17일

담당부서 환경부 대기관리과 (☎ 044-201-6903)

04

전국 주요 하천·호소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실시

전국 주요 하천·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방사성물질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

| 전국 주요 하천·호소 등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조사 실시 |

추진배경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공공수역에 대한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질법 개정

주요내용 이미 운영 중인 수질측정망을 활용하여 전국 주요 하천·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방사성물질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공개

- (측정지점) 주요 하천 및 호소 등 약 60여개 지점
- (측정항목) 세슘(Cs-134, Cs-137), 요오드(I-131)농도 등 3개 항목
- (측정주기) 반기별 모니터링

시행일 2014년 1월 1일

담당부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(☎ 044-201-7010)

05

위해우려종 관리제도 시행

국내에 최초 도입되는 외래생물에 대한 위해성 심사제도와 수입·반입 승인제도가 도입

| 위해우려종 관리제도 |

- 추진배경**
- 기존 제도는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이후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및 모니터링, 퇴치사업 등 사후관리에 집중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생태계 교란과 경제적 손실 발생
 - 국내 수입·반입 이전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우려종을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
- 주요내용**
-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24종을 생태계 위해우려종으로 지정
 - 생태계 위해우려종 수입·반입시 위해성 심사를 받고, 수입·반입 승인을 득하도록 함
- 시행일** 2014년 1월 1일
- 담당부서**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(☎ 044-201-7242)

06

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

2014년 1월 1일부터 폐수 및 폐수(공정포함) 오니는 해양배출이 금지

- 정부는 국제사회의 해양환경 보호활동 이행과 관련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투기 금지 대상을 단계별로 확대·시행
 - ※ '12년 하수오니·가축분뇨, '13년 음폐수·분뇨, '14년 산업폐수·폐수오니
- 육상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업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양배출이 가능하나,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폐수 및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

|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 한시적 인정기준 |

- 인정범위** 재활용·소각·육상매립 등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해양배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관련규정**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및 해양수산부 공고(제'13-327호, '13.9.11)
- 인정기준**
- 해당 광역시·도내 육상처리처리시설이 없는 경우
 - 해당 또는 인접 광역시·도내 육상처리처리업체가 용량 초과 등의 사유로 육상처리를 거부한 경우
- 해양배출 허용량**
- 육상처리 전환 시기에 따라 '15년까지 해양배출 차등(전년도 배출량기준 60~80%) 허용
- 담당부서**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(☎ 044-201-3731)

07

폐전기 · 폐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 도입

EU 등 선진국 수준의 재활용률 달성을 위해 폐전기 · 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국가 재활용목표를 설정하고, 제품군 관리를 통해 생산자의 의무이행을 용이하도록 할 계획

-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이 현행 10개에서 27개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자제품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이 강화

| 폐전기 · 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 개요 |

추진배경 EU 등 선진국 수준의 재활용률 달성

주요내용 ① 장기 및 연도별 국가재활용목표량 설정(업계 협의를 통해 추후 고시)
 ② 개별품목별 의무 부과방식에서 제품군별 의무 부과방식으로 변경

시행일 2014년 1월(전기 ·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 '13.7.16)

담당부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(☎ 044-201-7387)

08

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범위 확대 및 수당인상, 급여신설

- 석면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를 강화

※ 「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」개정 · 시행('14.1월)

- 지금까지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은 악성중피종, 폐암, 석면폐증 뿐이었으나, 2014년 1월부터는 미만성 흉막성비후*가 추가

※ 폐를 감싸고 있는 흉막이 두꺼워져 폐의 팽창을 방해받아 호흡이 곤란해지는 질병

- 또한, 2014년 1월부터는 석면피해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요양생활수당이 20% 인상, 석면폐증 질환자에게도 요양급여(치료비)가 지급

| 2014년 석면피해구제제도 변화 |

추진배경 석면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 강화

주요내용 ① 구제대상질환 추가(악성중피종, 폐암, 석면폐증 + 미만성흉막성비후)
 ② 요양생활수당 산정기준 20% 인상(2인가구 최저생계비 24~100% → 28.8~120%)
 ③ 석면폐증 질환자 요양급여(치료비) 지급(신설)

시행일 2014년 1월 1일

담당부서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(☎ 044-201-6818)